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9

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정성호·강병원·김경협

김영주 · 김정호 · 박용진

박 정·백혜련·윤관석

윤후덕 • 이상직 • 노웅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79호)에 규정하였으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유재산 무산 사용을 위해선 현행법에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함.

또한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민자역사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「철도사업법」에 따른 철도시설 점용은 도로·하천 등 타 시설 점용과는 달리 현행법에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점용료 감면이 불가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및 감염병 발생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(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23호 및 제2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3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

224. 「철도사업법」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